

# 『북부권행정협의회』 규약안

의안  
번호

260

제출년월일 : 96. 12.  
제출자 : 제천시장

## I 제안이유

- 민선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충청북도 북부권 자치단체간 관련되는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 협의 처리함으로써 상호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수요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돈독한 유대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 각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협의회를 운영코자 함.

## II 주요골자

### □ 협의회 개요

- 명 칭 : 충청북도 북부권 행정협의회
- 구 성 :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 조직(위원) : 충주·제천시장, 음성·단양군수
  - 회장 : 협의회주관 자치단체장
    -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순의 윤번제
  - 간사 1인 : 회장 소속 시정(총무, 내무)과장
  - 서기 4인 : 각 시군 시정(행정) 계장
- ※ 별도 배석위원, 운영위원, 실무협의회 운영

○ 주요기능(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5조 규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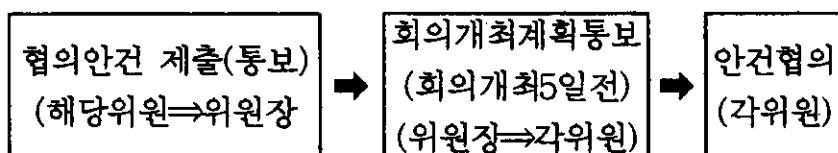
-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업단지 조성
- 주요도로망 신설·개보수, 버스노선 신설·변경
- 환경오염 방지시설, 행정구역 경계 조정
- 기타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항등

□ 협의회 운영

○ 회의개최

- 정기회 : 년 2회 (매년 2~3월, 8~9월)
  - 임시회 : 관계단체장 요구시 회장이 소집
- ※ 회의시기 : 위원간 사전협의후 결정

○ 협의체계



※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에게 조정 요청

○ 회의경비

- 협의회 운영경비 : 회의주관 자치단체 부담
-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에 따른 경비 :  
협의회에서 협의결정

## □ 기타사항

- 회의록 : 간사가 작성 관리하며 다음 회의시 보고와 함께 위원의 서명 날인
- 규약개정 의결 정족수 : 위원 3/4 찬성
- 보 칙 :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협의회에서 별도 규정

## III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행정협의회 구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협의회 구성기준)

붙임 : 충북북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

충주 시  
제천 시  
음성 군  
단양 군



# 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충청북도 북부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충청북도 북부권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상호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수요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돈독한 유대관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으로 구성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결정 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2. 주택 및 공업단지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주요 도로망의 신설 및 개수, 보수 등에 관한 사항
4.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공해·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에 관한 사항
8.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9.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10. 남한강과 관련된 사항
  11. 친목과 유대를 위한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에 관한 사항
  12. 기타 협의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 2 장 조직 운영

- 제5조(조직) ① 협의회의 위원은 충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단양군수로 한다.
- ② 협의회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 위원을 참석 시킬 수 있으며 대리위원도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 ③ 회장은 당해 협의회를 주관하는 자치단체장으로 한다.

- 제6조(배석위원) ① 협의회에 배석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배석위원은 상정 협의안건을 관장하고 있는 실국장 및 실과소장으로 한다.
- ③ 배석위원은 토의에는 참여하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제7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월부터 3월 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③ 회의주관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순의 윤번제로 하며 회의 개최시기는 회장이 위원과 사전 협의후 결정한다.

제9조(협의방법) ① 협의할 안건이 있는 위원은 협의안건을 사전에 회장과 관계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주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의자료, 개최계획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4인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주관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총무,내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각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시정(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경비부담) 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주관하는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필요한 경비요인 발생시에는 사전 협의로 결정한다.

제13조(조정요청 요구)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항은 회장이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실과장은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 장 기 타

제16조(규약개정 및 폐지) ① 이 규약의 개정 및 폐지는 위원 3/4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보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6년 12 월 일

충 주 시 장 이 시 종



제 천 시 장 권 희 필



음 성 군 수 정 상 현



단 양 군 수 정 하 모

